

# SW사업자신고 운영지침 개정

2014.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2. 법 제2조제4호 및 고시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고시 제3조의 본 신고 제도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말한다.
4. 고시 제7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이하 "사업자신고"라 한다)"라 함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임을 증명받기 위하여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이하 "사업자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수리 받는 것을 말한다.
5. 고시 제12조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이하 "실적신고"라 한다)"라 함은 제4호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이하 "실적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수리 받는 것을 말한다.
6. "신고자"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신고서"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자신고서 및 실적신고서를 말한다.
8. "접수"라 함은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행기관이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수리"라 함은 수행기관이 접수된 신고서를 제18조의 절차에 의해 확인 후 신고사항을 공식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확인서"라 함은 수행기관이 신고된 내용을 발급하는 문서로서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 및 제1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이하 "실적확인서"라 한다)"를 말한다.
11. "발급"이라 함은 수행기관이 신고자에게 교부할 확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온라인 발급이라 함은 신고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행위까지를 말한다.
12.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4조에

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정보관리체계"로 신고자와 수행기관이 온라인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3.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제12호의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전자신청"이라 함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납부"라 함은 인터넷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하 "PG서비스"라 한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6. "연계정보"라 함은 조달청,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서울신용보증보험 등에서 제12호의 시스템에 계약정보 등을 연계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제2장 신고의 요건 및 대상

**제3조(사업자신고의 요건)** 사업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제4조(실적신고의 요건 및 대상)** ① 실적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한다.

② 실적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실적은 수리가 제한될 수 있다.

## 제3장 신고의 종류 등

**제5조(신고의 종류 및 구분)** ① 신고의 종류는 그 유형에 따라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의 사업자신고와 실적신고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신고와 실적신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신규, 변경, 합병,완료로 분류한다. 단, 제3호의 합병은 사업자신고에 한한다.

1. 신규(이하 "사업자 신규신고" 또는 "실적 신규신고"라 한다) - 최초 신고 시
2. 변경(이하 "사업자 변경신고" 또는 "실적 변경신고"라 한다) - 종전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여 신고 시
3. 합병(이하 "사업자 합병신고"라 한다) - 기업 영업양수도 등에 의해 실적의 이관이 필요하여 신고 시
4. 완료(이하 "실적완료신고"라 한다) - 이행완료된 실적신고 시

**제6조(신규신고)** ① 고시 시행일 현재 사업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사업자신고를 할 때에는 사업자 신규신고를 한다.

② 사업자신고를 한 자가 종전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실적을 신고할 때에는 실적 신규신고를 한다.

**제7조(변경신고)** ① 사업자 신규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고한다.

② 실적 신규신고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실적 변경신고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액
3. 이행완료일
4. 최종매출액

**제8조(합병신고)** ① 기업 영업양수도 등으로 종전에 신고된 실적의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적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합병신고를 한다.

② 사업자 합병신고는 양수 및 양도 기업 모두 사업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의 실적을 이 지침에 의해 이관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한다.

1. 양수회사가 신고 되어 있고 양도회사가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회사가 실적 신규신고를 한다.
2. 양수회사가 신고 되어 있지 않고 양도회사가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수회사가 사업자 신규신고 및 사업자 합병신고를 한다.
3. 양수회사 및 양도회사 모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회사가 사업자 신규신고 및 해당 실적의 실적 신규신고를 한다.

④ 사업자 합병신고 시 실적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양도회사의 신고된 실적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양수도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흡수/분할 사실 명시) 각1부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실적에 대한 양수도 없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발생하여 제7조제1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변경신고를 한다.

**제9조(완료신고)** 제6조제2항의 실적신고를 한 사업자가 이행완료 시 실적 완료신고를 한다.

**제10조(신고의 시기)** 제5조의 각 종류별 신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 신규신고 : 수시
2. 실적 신규신고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3. 사업자 변경신고 : 고시 제8조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실적 변경신고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5. 실적 완료신고 :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6. 사업자 합병신고 : 분할/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4장 신고의 절차

**제11조(신고의 방법)** 신고의 방법은 전자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의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신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사업자신고 절차)** 사업자신고의 신고절차는 별지1 및 별지2와 같으며, 각 신고절차는 제5조제2항의 분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기재)** ① 영 제17조의4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업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중소기업 사업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또는 제1항에 의해 대기업으로 구분된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③ 신고자는 제1항, 제2항 및 최근년도 결산 매출액을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를 신고한다.

④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개별입찰별로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의 발급 시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상이할 경우 수행기관에 정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제4항을 사업자신고 및 확인서 발급 시 고지하여 오기 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한다.

**제14조(실적신고 절차)** 실적신고의 신고절차는 별지4 및 별지5와 같으며, 각 신고절차는 제5조제2항의 분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신고서의 제출)** ①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기관에 제출한다.

② 신고서의 제출은 수행기관의 통상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라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의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수수료의 납부)** ① 사업자신고 시 신고자는 신고의 종류에 따라 고시 제16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행기관에 납부한다.

② 수수료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42조, 제43조에 의한다.

## 제5장 신고의 처리

**제17조(신고의 접수)** ① 신고의 접수는 전자신청을 포함한 신고서의 제출과 전자납부를 포함한 수수료의 입금이 모두 확인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접수일자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접수번호 : 신고년도와 당해연도 접수된 신고의 일련번호를 조합
2. 접수일자 : 신고서의 제출일과 수수료의 입금확인일 중 후의 일자

**제17조의2(접수의 철회)** ① 신고자는 신고의 접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기관에 요청한다. 단, 신청 후 영업일 5일 경과 시 접수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철회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철회 처리하고, 철회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전자신청의 경우 신고자가 작성중인 정보는 보존한다.

③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신고의 접수를 철회할 수 있다.

1. 신고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2. 신고자가 제3조의 신고 자격요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18조(신고정보의 확인 절차)** ① 수행기관은 접수 이후 각 호에 따라 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증빙자료 등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신고서의 정보 확인 절차
  - 가. 연계정보를 통한 확인
  - 나. 전자공시정보 검색을 통한 확인

다. 종전에 신고된 정보의 비교검토를 통한 확인

라. 신고자의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2. 실적신고서의 정보 확인 절차

가. 연계정보를 통한 확인

나. 발주자의 확인

다. 신고자의 증빙자료 : 당해 사업의 발주처, 계약대상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증명서류 등

② 신고자의 증빙자료 제출 시 간인되어 있지 않은 해당 계약서 붙임서류 등 사본으로 추가 증명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발주자의 확인)** ① 제19조제1항제2호의 발주자 확인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신청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담당자가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실적신고 시 제1호의 담당자를 선택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 및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발주자의 확인 요청이 있는 후 3일 이내에 발주자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이 신고 정보를 확인한다.

**제20조(실적의 인정 기준)** ① 신고된 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1. 계약대상자 : 신고자가 신고한 실적의 계약 당사자로 신고자와 계약서에 상호 날인이 되어 있는 자

2. 발주자 : 당해 사업을 최초 발주한 자로 단독 및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와 동일

3. 원수급자 : 하수급 신고인 경우 당해 사업의 최초 발주자와 계약한자

4. 사업명 : 계약서의 계약명

5. 원사업명 : 하수급 신고인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자 간 계약서의 계약명

6. 계약기간 : 계약서의 계약기간

7. 계약금액 : 단독 및 하수급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당해 신고자의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수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조제10호의 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계약금액(실적인정금액)은 신고 및 수리된 계약금액으로 하며,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을 제하지 않는다.

④ 신고자의 임의 선택 또는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1. 계약번호
2. 산업분야, 사업분야
3. 발주자의 소속 지역
4. 실수요기관
5. 원수급자 및 계약대상자의 법인등록번호

**제21조(신고의 수리)** ① 수행기관은 제18조에 의해 신고정보가 확인되면, 신고일자와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처리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신고번호 : 제17조제3항제1호의 접수번호
2. 신고일자 : 제17조제3항제2호의 접수일

**제22조(신고의 처리기한)** ① 신고의 접수부터 수리까지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로 한다.

② 접수일이 휴일인 경우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신고 진행 상황의 확인)** 수행기관은 신고자가 신고의 접수, 수리, 보완요청 등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4조(신고의 보완요청)** ① 신고의 미비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행기관은 확인을 보류하고 신고자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보류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수행기관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 하였으나, 1개월 이내로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중 승인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처리한다.

**제25조(신고의 취소)** ① 수리된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단 수행기관 또는 신고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신고의 취소 또는 취소요청을 할 수 있다.

1. 허위신고
2. 중복신고

② 신고의 취소 요청은 별지8호 서식을 기재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취소한다. 단 사업자신고의 취소는 직전에 발급된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발급된 신고확인서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제26조(신고의 정정 등)** ① 신고서의 기재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자는 수행기관에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신고서의 기재 오류 등을 먼저 발견한 경우 수행기관의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한 사항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7조(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수행기관은 제25조에 의해 당해 신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발급된 확인서는 효력이 상실된다.

② 수행기관은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발주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으며, 또한 시스템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6장 확인서 발급 등

**제28조(확인서의 종류)** 제21조의 신고의 수리 이후 발급할 수 있는 확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10호의 신고확인서
2. 제2조제10호의 실적확인서

**제29조(확인서의 발급 절차)** ① 신고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수수료의 납부로 같음하며, 수행기관은 수리 즉시 신고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실적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별지7과 같으며, 수행기관은 수수료의 입금확인 즉시 실적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0조(확인서의 발급 방법)** 신고자는 제29조의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수행기관은 신고자의 선택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1조(온라인 발급)** 신고자가 각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공인인증서의 인증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31조의2(온라인 발급 횟수 등의 제한)** ① 신고확인서는 고시 제10조에 한해 횟수의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②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신청된 실적확인서의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 5회 까지로 제한한다.

**제32조(오프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의 수령방법)** 신고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배송에 따른 부대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1. 택배 수령
2. 퀵배달 서비스 수령

## 제7장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시스템

**제33조(회원가입)** ① 신고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신고 및 실적신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SW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가 가입하며, 동일 사업자에 다수의 종사자가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가입 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하며, 수행기관 및 시스템 관리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가입 시 소속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자의 회원 가입한 자는 소속 사업자의 신고정보를 열람 또는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⑥ 회원이 소속사를 퇴사하였을 경우 회원은 탈퇴 요청에 의한 회원 탈퇴를 하여야 하며, 이는 당해 소속사의 요청 및 퇴사사실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⑦ 발주자가 발주자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자의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 회원가입 절차는 제2항 내지 제6항까지의 신고자의 절차와 동일하다.

**제33조의2(종전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수행기관에서 운영한 신고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종전의 회원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시스템에 최초 로그인 시 제33조제3항의 “아이핀 인증”을 통해 실명여부를 확인한다.

**제34조(계정관리 및 보안)**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신고자의 계정 및 신고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 계정과 비밀번호는 4자 이상 12자 이내의 영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계정과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5조(시스템장애)** 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장애발생 즉시 시스템 관리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장애사실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신고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6조(정보의 기록 및 열람)** ① 신고서 및 확인서 발급 내역 등 신고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정보는 시스템에 기록·유지한다.

② 수행기관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정보의 일부를 열람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전자신청의 우선권고)** 수행기관은 고시 제14조 규정에 의해 신고자가 전자신청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권고한다.

## 제8장 정보제공 협조 등

**제38(정보제공 협조 의무)** 신고자는 수행기관이 신고와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정보제공의 불가 등)** ① 신고자는 특별한 사유로 정보제공 요청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행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정보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제40조(확인서 발급의 제한)** 수행기관은 신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 협조의 거부 및 고시 제10조제3항의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장 수수료

**제41조(수수료의 납부)** ① 신고자는 사업자신고나 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고시 제16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42조(납부 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자납부
2. 계좌이체
3. 무통장입금
4. 수행기관 직접방문 납부

② 수행기관은 제1항제1호의 전자납부를 위해 PG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항제3호의 납부방법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제43조(납부의 확인 등)** ① 수행기관은 신고자의 수수료 납부의 확인 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행하여 신고자에게 교부 한다. 단, 제43조 제1항제1호 전자납부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한다.

② 수수료의 납부일자는 입금일자로 하되,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이 수행기관의 업무 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제44조(수수료의 환불)** ① 신고자는 제17조의 2에 의한 신고 접수의 철회가 있을 경우 수행기관에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 절차에 의해 수수료를 사업자에게 환불한다.

③ 단, 허위신고로 인한 취소의 경우, 그리고 접수 이후의 수수료 환불은 요청할 수 없다.

## 제10장 신고의 활용

**제45조(신고 자료의 보관)** 신고자가 수행기관에 제출한 신고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전자신청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베이스는 반영구적으로 보존한다.

**제46조(신고정보의 사후관리)** ① 수행기관은 신고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사업영위 여부 등에 대해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관리방안을 통하여 휴폐업 및 사업폐지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신고정보의 활용)** 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신고 정보의 제공
2.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마케팅 활동 지원
4. 기타 수행기관 및 신고정보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정보제공의 제한)** 제48조제1호에 따라 국기기관 등이 신고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고자별 실적의 세부정보
2. 신고자의 영업기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의 '실적신고'에 대하여는 2014.06.01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포방법)** 이 지침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3조(신고의 보완요청)** 지침개정 전 서류보완으로 수리처리가 미완료 된 기업의 경우 시행일 이후 30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수리완료를 한다. 단,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중 승인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처리한다.

**<별표1>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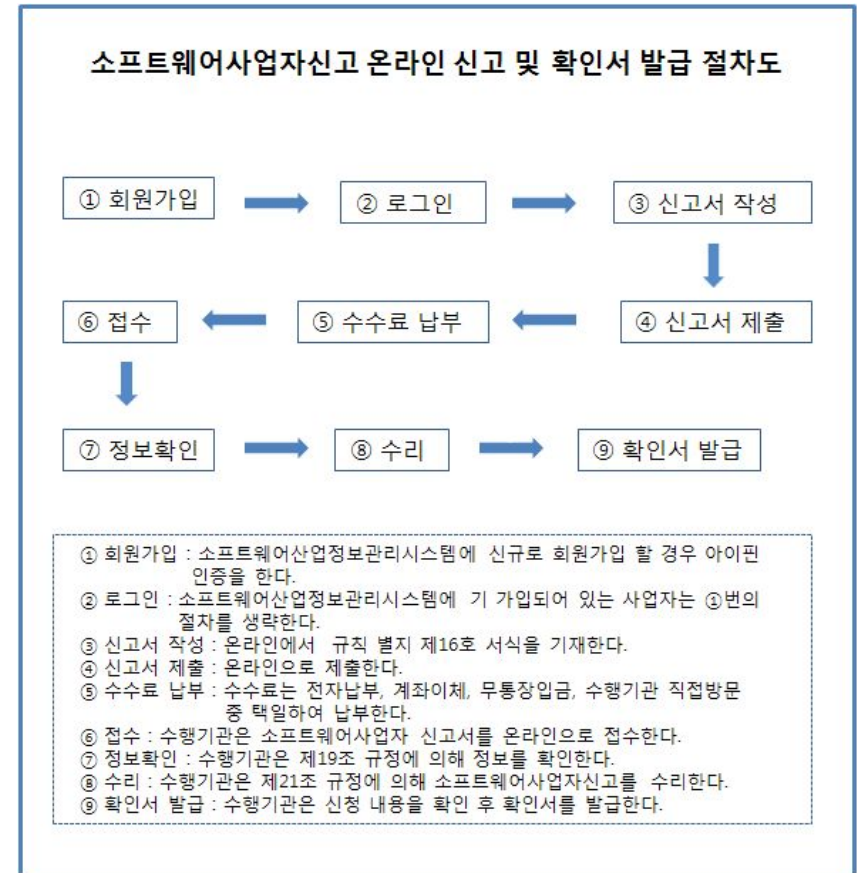
\* 정보통신표준품목체계 중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분류에 의한 사업분야

품 명				
컴퓨터관련 서비스	시스템통합(SI)	컨설팅 및 기획		
		설비 및 네트워크 구축	하드웨어설치 및 지원	
			네트워크통합	
		S/W개발지원	패키지통합	
	S/W개발			
	기타 SI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SM)	Helpdesk		
		Backup서비스		
		기타 유지보수		
	자료처리(DP)	자료입력		
		자료처리		
	ASP			
	정보보호서비스	보안컨설팅		
		보안관제서비스		
인증서비스				
기타 정보보호서비스				
기타 컴퓨팅서비스				
패키지S/W	운영체제S/W	WINDOWS 계열		
		Unix 계열		
		리눅스 계열		
		MOS 계열		
		기타 운영체제S/W		
	통신S/W	통신망관리 S/W		
		통신프로토콜지원 S/W		
		통신응용 S/W		
		기타 통신S/W		
	유틸리티S/W			
	시스템관리 S/W			
	정보보호 S/W	침입차단 S/W		
		침입탐지 S/W		
		서버보안 S/W		
		PC보안 S/W		
		PKI 암호화S/W		
		바이러스 백신 S/W		
		보안관리 S/W		
		기타 정보보호 S/W		
	미들웨어	트랜잭션관리 미들웨어		
		기타 미들웨어		
	기타 시스템 S/W			

품 명				
패키지S/W	개발용 S/W	프로그램개발용 도구	프로그램개발용 언어	
			프로그램개발용 S/W	
			GUI 개발도구	
			Client-Server 개발도구	
			지식처리시스템 개발도구	
			웹개발도구	
		기타 프로그램개발용 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프로그램개발용 S/W
		컨텐츠개발용 도구	GUI 개발도구	
			Client-Server 개발도구	
	지식처리시스템 개발도구			
	웹개발도구			
	기타 프로그램개발용 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멀티미디어타이틀 저작도구	
	컨텐츠개발용 도구	게임 저작도구		
		웹페이지 저작도구		
		기타 컨텐츠개발용 도구		
		DBMS	RDBMS	
	OODBMS			
	ORDBMS			
	기타 DBMS			
	기타 개발용S/W			
	응용S/W	일반사무용S/W	그룹웨어	
			통합사무용S/W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최종 사용자용 DBMS	
			프리젠테이션 S/W	
			기업포털솔루션(EIP)	
			스토리지솔루션	
기타 일반사무용 S/W				
기업관리S/W			ERP S/W	
		재무, 회계관리 S/W		
		인사, 급여관리 S/W		
		공급망관리S/W(SCM)		
		생산, 현장관리 S/W		
		고객관계관리S/W(CRM)		
		기타 기업관리용 S/W		
과학용S/W		시뮬레이션 S/W		
		통계분석용 S/W		
		수치계산용 S/W		
		기타 과학용 S/W		
산업용S/W	CAD/CAM/CAE용 S/W			
	공정제어용 S/W			
	GIS S/W			
	EC S/W			
	EDI S/W			
	기타 산업용 S/W			
기타 응용S/W				
기타 패키지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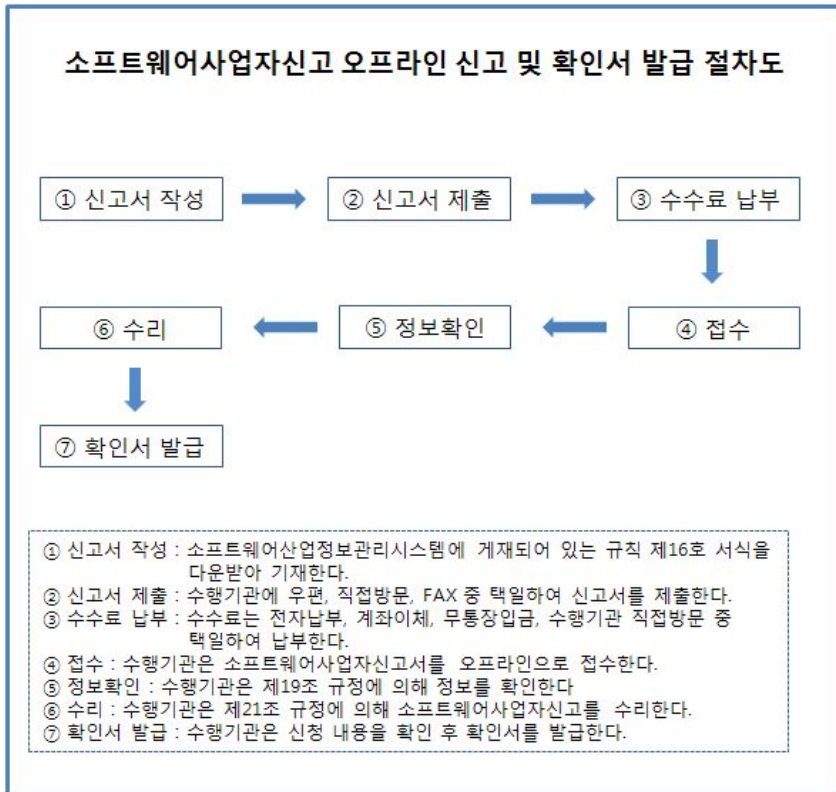
품 명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정보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교육용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ONLINE
			OFFLINE
			MOBILE
		생활문화정보용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ONLINE
			OFFLINE
			MOBILE
	오락, 게임 용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PC	ONLINE PC
			OFFLINE PC
		비디오	
		아케이드	
		Mobile	
		기타 오락, 게임 콘텐츠개발서비스	
		기타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디지털 출판물 개발서비스	e-book 개발서비스		
	기타 디지털출판물 개발서비스		
디지털 영상물 개발서비스	특수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기타		
	기타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DB제작 및 검색서비스	데이터베이스제작(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및 교육		
	기타 데이터베이스 관련업		

### <별지1>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온라인 및 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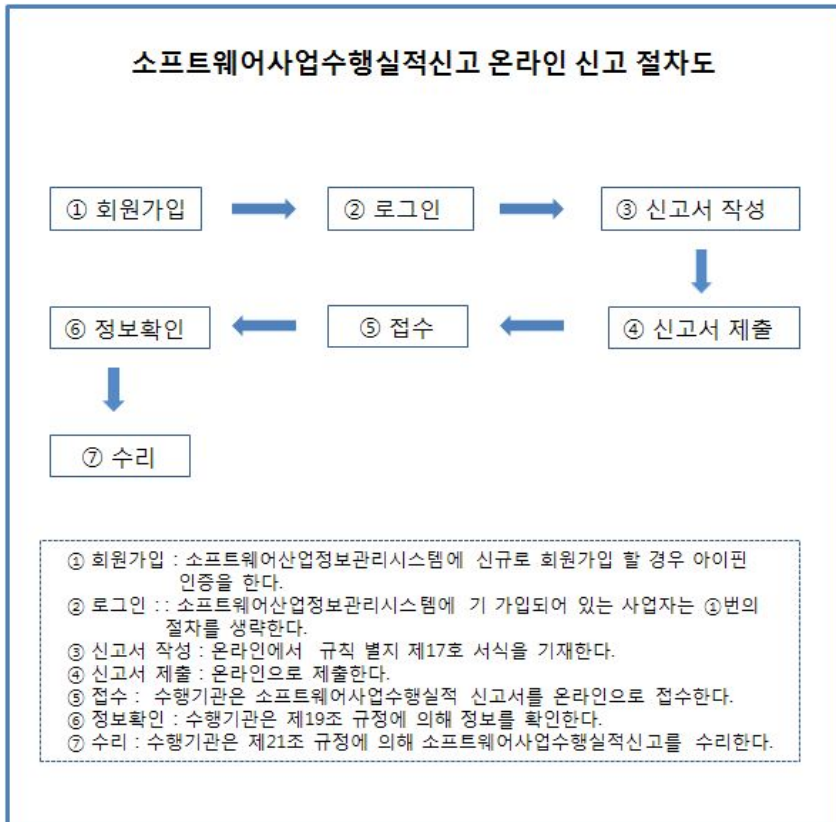
<별지2>사업자신고 오프라인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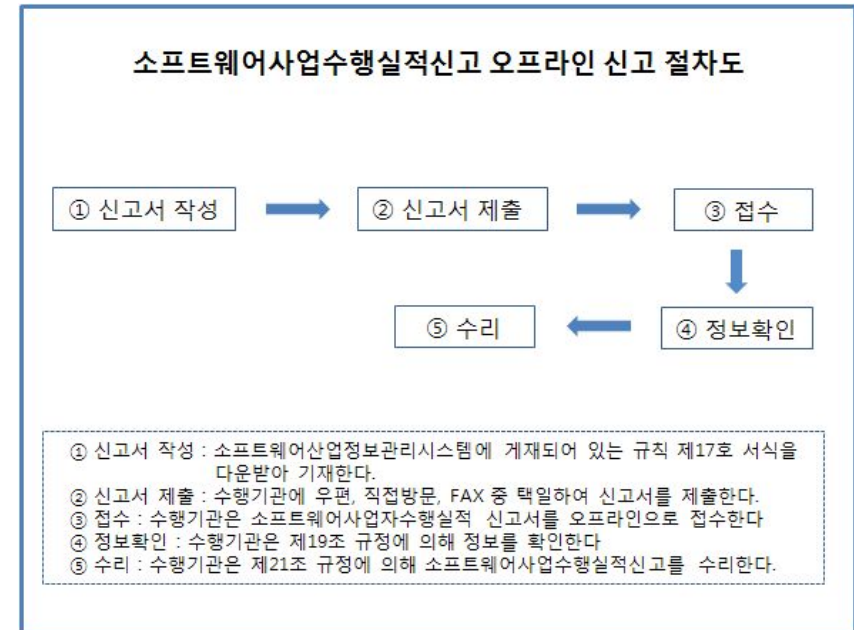
<별지 3>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항목	작성방법
신고분야	실제 사업을 영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 가능
회사명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명 기재. 한글기재를 원칙으로 하며,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기재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모두 기재
설립년월	사업자등록증의 설립일을 월까지 기재(200901)
본사소재지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 기재
전화번호/FAX번호	대표번호 기재
전업구분	기업 총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업 선택, 타 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있는 경우 기타 겸업 선택
상시종업원수	전년도 사업 결산 시 상시종업원수 기재
기업형태 (개인/법인)(상장/코스닥/비상장)	해당사항 선택 기재
재무현황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사항 기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및 동지침 12조의 2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대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8천억 미만과 8천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피인수회사(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합병신고 시 기재하며, 피인수(실적양도)회사의 회사에 대하여 기재
담당자	기업의 사업자신고업무 담당자 정보 기재

<별지4>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 온라인 신고



<별지5>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 오프라인 신고 절차



<별지 6>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항목	작성방법
일반현황(원사업명)	1. 단독/공동수급인 경우 : 기재하지 않음 2. 하수급인 경우 : 발주자와 원수급자간의 계약한 사업명(계약명)을 기재
일반현황(사업명)	1. 단독/공동수급인 경우 : 신고자와 발주자간의 사업명(계약명) 2. 하수급인 경우 : 신고자와 계약자간의 사업명 (계약명)
일반현황(계약번호)	원수급자(공동수급자 포함)가 조달청 등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번호를 기재
일반현황(수급형태)	1. 단독수급 : 발주자와 단독계약일 경우 2. 공동수급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하도급 : 하도급 승인 규정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현황(산업분야)	산업분야 분류표를 참조하여 신고하는 실적이 해당되는 산업분야의 코드번호를 선택
일반현황(사업분야)	사업분야 분류표를 참조하여 신고하는 실적이 해당되는 사업분야의 코드번호를 선택
발주자현황(기관명)	신고한 실적을 최초 발주한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
발주자현황(기관구분)	발주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분류표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
발주자현황(지역)	지역분류표를 참조하여 발주자가 속해있는 지역의 코드번호를 선택
발주자현황(실수요기관)	발주기관과 실수요기관이 다른 경우에만 기재 (조달청, 정보사회진흥원 등 입찰업무 대행을 통해 발주되는 경우)
수급자현황(원수급회사명)	하수급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발주자와 계약한 원수급자를 기재
수급자현황(계약상대자)	신고자와 계약한 계약상대자를 기재 (단독/공동수급인 경우 발주자와 동일)
공동수급현황(총계약금액)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기재하며, 공동수급자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을 기재
공동수급현황(공동수급자수)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기재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의 총 수를 기재
공동수급현황(지분율)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기재하며, 공동수급 총 계약금액 중 신고자의 지분율(계약서상)을 기재
계약현황(계약기간)	신고하는 실적의 계약기간을 기재 (변경신고인 경우 변경된 계약기간을 기재)
계약현황(계약금액)	신고하는 실적의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을 기재(공동수급인 경우 신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계약현황(이행완료일)	사업의 이행완료일(검수완료일 등)을 기재하며, 신고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기재하지 않음.
계약현황(최종매출액)	이행 완료된 사업인 경우 당해사업으로 발생한 최종 매출액 기재
보증서발급현황	계약이행보증, 선금보증 등 당해 사업으로 발급받은 보증서 현황을 기재
담당자	신고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별지 7>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신청 절차

